

해 외 건 설 촉 진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연 월 일	2020. 12. .

법 제 처 심 사 전

1. 제안이유

해외건설촉진법은 해외건설업자의 해외공사 계약체결 통보를 통해 해외사업실적을 증명하고 있으나, 다수기업이 함께 시행한 해외공사의 경우 기업별 실적이 정확하지 않게 통보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해외공사 계약체결 결과 통보시 다수당사자 계약의 경우 참여한 기업별로 지분율을 명시하도록 하여 정확한 사업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공사 계약체결 결과 통보시 첨부해야하는 서류에 “합작투자공사 등과 같은 다수당사자 계약의 경우 지분율을 포함한 계약서”를 추가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2. 00. ~ 2021. 1. 00) 결과, 특기할 사항없음

3) 행정규제 : 비규제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계약서(합작투자공사 등과 같은 다수당사자 계약의 경우 지분율을 포함한 계약서)사본.

별지 제13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수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공사 계약체결 결과 통보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3호 서식의 개정사항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행하는 해외공사 수주활동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2. 작 제 3. <u>계약서 사본</u> . 다만, 개발형공사인 경우에는 진출국이 발행한 사업승인서	제13조(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3. <u>계약서(합작투자공사 등과 같은 다수당사자 계약의 경우 지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본.</u> -----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국토교통부장관

작 성 자: (소속:

해외공사 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

성명:

발신: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단위 : 천만원, 단, %는 소숫점이하 1자리)

사 업 개 요	국가명		공사명	한글							
	도시명			영문							
	계약액			② 환율	계약일	공사기간					
	미화(A)	① 현지화(B)	계(A+B)			착공일	준공일				
	③ 발주처			설계사			감리사				
	국가명	발주처명		국가명	회사명		국가명	회사명			
참 여 형 태	④ 발주형태		⑤ 수주형태		⑥ 재원별 참여형태		⑦ 수행방식		⑧ 계약방식		
	⑨ 프로젝트 공종		⑩ 수행 공종(%)								
			토목	건축	산업설비	전기	통신	용역	수주 및 개발		
	원 도 급	합작사		하도급	원도급사		합작사				
국가명		회사명	국가명		회사명	국가명	회사명				
계 약 조 건	기성지불방법		지체상금			유보금 (%)	물가보상 조항	하자보수 기간			
	결제기간	화폐종류	기간단위	금액	최고액						
	보증현황										
	구분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수금보증		하자보증		기타보증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금액 (%포함)											
공 사 내 용	※ 국내공사의 입찰참가 사전심사(P/Q)용 공사실적확인과 관련된 부분으로 주요내용 물량이 표시되도록 상세히 기재 요망										
입 찰 결 과	순위	국가명		회사명		투찰액		비고			
	1										
	2										
	3										

※ 첨부서류 : 계약서 사본(개발형 공사의 경우에는 진출국이 발행한 사업승인서, **합작투자공사 등과 같은 다수당사자 계약의 경우 지분율을 포함한 계약서**)

작성방법	1. ①란의 현지화는 미화를 제외한 모든 화폐(원화 포함)를 천만원로 기재합니다.
	2. ②란의 환율은 계약서상 환율을 적용하되, 계약서에 없을 경우 계약일자 외환은행 최종 고시환율의 미화환산율(비고시환율은 Cross Rate 적용)을 적용합니다.
	3. ③란의 발주처는 개발형공사 EPC 도급사업의 경우 SPC사를 기재하고, 하도급공사의 신고시 전체 프로젝트 발주처(원도급사가 아님)를 기재합니다.
	4. ④란의 발주형태는 도급형(지명, 공개, 수의), 개발형(지명, 공개, 수의) 등 해당 프로젝트의 발주성격을 기재합니다.
	5. ⑤란의 수주형태는 원청단독, 원청합작, 하청단독, 하청합작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6. ⑥란의 재원별 참여형태는 CO(일반도급형_ODA), CG(일반도급형_그룹자체공사), CB(일반도급형_발주처예산), CF(일반도급형_시공자금융), P(개발형_부동산 제외 기타민간투자사업 : B00, BOT, BTL 등), D(개발형_부동산개발공사)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7. ⑦란의 수행방식은 CM(Construction Management), CO(Construction Only), CS(Construction Supervision), DE(Design), DS(Design Supervision), FS(Feasibility Study), O&M(Operation & Maintenance), OO(Organizing Only), PO(Procurement Only), TA(Technical Assistance), TB(Turnkey base)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8. ⑧란의 계약방식은 C(Cost+Fee), L(Lump Sum Base), U(Unit Rate)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9. ⑨란의 프로젝트 공종은 토목, 건축, 산업설비, 전기, 통신 등 프로젝트 전체의 공사 종류를 기재합니다.
	10. ⑩란의 수행공종은 신고기업의 담당 수행공종(실적발급 기준)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